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17.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와 관련하여 담양군의회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의 표기와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의 실효성 확보 및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별표 2의 일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

나.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로 자문위원회 명칭 개정

다.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출산 휴가 일수 개정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3. 17. ~ 3. 22.(5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규칙안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2) 제1항 단서 중 “**확정된 경우에는**”을 “**확정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 경우**”를 각각 “**받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회규칙을**”을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을 “**받으면**”으로, “**달에 감액**”을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여**”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때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국내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2. 국외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제7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을 “의원”으로, “관해서”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별표 2의 일비(1일당)란 중 “20,000”을 “25,000”으로 한다.

제2조(「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로, “준수해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를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한다.

제4조 중 ““안전심의 등””을 ““안전 심의등””으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를 “안전 심의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를 “**안전 심의등 관련 활동을 회피**”로 한다.

제7조 중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를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경우**”를 “**경우에도**”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로,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해야 한다**”를 “**때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명목에**”를 “**명목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친분관계를**”을 “**친분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불특정 다수인**”을 “**불특정한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친분관계를**”을 “**친분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로, “**신고해야**”를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원에게**”를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외**”로,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를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 중 “**유래되는**”을 “**유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완해야**”를 “**보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반환해야**”를 “**반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검직허가**”를 “**검직 허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로,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해야**”를 “**반환하여야**”로, “**통지해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의 영리행위 신고서**”로, “**신고해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상호간에**”를 “**상호 간에**”로, “**상호간 또는**”을 “**상호 간 또는**”으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면 제외한다.”

다)”로, “대여 받아서”를 “대여받아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대여 받으려”를 “대여받으려”로,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의 금전 거래 신고서”로, “신고해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술선수범해야”를 “술선수범하여야”로 한다.

제17조 중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을 “상호 간 또는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위반행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시해야”를 “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 사항”을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 사항”으로, “행동강령조례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례운영”을 “운영”으로, “보장해야”를 “보장하여야”로,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받아 「지방자치법」 에”를 “받아 「지방자치법」 에”로,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로, “신고해야”를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야 하는**”을 “**하여야 하는**”으로,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도받은 경우에는**”을 “**인도받으면**”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해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따라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인도경위**”를 “**인도 경위**”로, “**통보해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운영**”을 “**운영**”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촉해야**”를 “**위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모집에 의해야**”를 “**모집하여야**”로, “**공개모집 하였음**”을 “**공개 모집 하였음**”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미달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촉해야**”를 “**위촉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법률자문**”을 “**법률 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안의**”를 “**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피해야**”를 “**회**

피하여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자문요청**”을 “**자문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지해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요하는 경우에는**”을 “**요할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작성·관리해야**”를 “**작성·관리하여야**”로, “**포함해야**”를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의견청취**)”를 “(**의견 청취**)”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의결사항의 통지**)”를 “(**의결 사항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보해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8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를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운영등 입법활동”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속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를 “소속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담양군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 선거에 관한 사항
5. 제2항의 직무 범위 이외에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6.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를 삭제한다.

제4조(「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선서해야”를 “선서하여야”로 한다.

제3조 중 “완수해야”를 “완수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존중해야”를 “존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해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을 “아니”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처리해야”를 각각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취해야”를 각각 “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검임업무”를 “검임 업무”로, “관하여”를 “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임업무”를 “검임 업무”로, “통보해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관의 장”을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해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착용해야”를 “착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한다) 또는”을 “한다) 또는”으로, “초과한 경우”를 “초과하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표 4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시해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허가해야”를 “허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 경우에는”을 “요할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해야”를 “첨부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가능))”을 각각 “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를 “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모성보호 및”을 “모성보호시간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제9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5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 산	배우자(한 번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
	배우자(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33조</u> 에 따라 담양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u>시행령」 제33조</u> ----- ----- ----- -----.
<u>제4조의2</u>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u>확정된 경우에는</u>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u>제5조</u>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① ----- ----- ----- -----. ----- <u>확정되면</u> ----- ----- -----.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② ----- ----- -- <u>받으면</u> ----- ----- -----.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
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
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
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
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3. (생략)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
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5조(여비 지급) 의원이 담양군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
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로 출장 가는 때는 여비를 지급
한다.

----- 받으
면 -----

-----.

1. -----

-----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을 -----

2. 3. (현행과 같음)

③ -----

----- 받으면 -----

----- 달의 의
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여 -----.

제6조(여비 지급) ① -----

----- 때에는 -----
-----.

<신 설>

제6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 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와 국내 출장을 갈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 운임, 선
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등에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
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여비 지급 기준) ① 국내 여

비는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여비는 별표 3의 국외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
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국내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2. 국외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삭 제>

<삭 제>

<u>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u> <u>제7조의2 (생략)</u> <u>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 시 여비)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u> <u>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u> <u>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u>	<u>제7조 (현행 제7조의2와 같음)</u> <u><삭제></u> <u>제8조(준용) 의원</u>----- ----- --- <u>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u> -----.
--	---

제2조(「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직무관련자”란 <u>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제1조(목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 준수하</u> <u>여야 -----</u> -----. <u>제2조(정의) -----</u> -----. 1.----- ----- -----

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생략)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

--.

가. (현행과 같음)

나.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2. (현행과 같음)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

“안전 심의 등”-----

----- 안전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

-----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안전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
 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
 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
 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
3조의2-----

----- 경우에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때는 그 심의·의
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
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사항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 명목과 ---

된다.

② (생략)

③ 제1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생략)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친분
을 -----

5. (현행과 같음)

6. 불특정한 여러 사람-----

7.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

④ -----

----- 친분을 -----

----- 별지 제2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신고하여야 ---.

⑤ -----

----- 하여야 --.

⑥ ----- 의원 -----

-----.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 ----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

② -----

-----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외 ----- 제출하여야 --.

③ -----
-----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

-----.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 유래하는 -----

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⑤ (생략)

-----.

② -----

-----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
라 신고하여야 -----.

③ -----

보완하여야 --.

④ -----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

⑥ -----

-- 반환하여야 -----
-----.

⑦ -----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
-----.

⑧ -----

--. -----
----- 검직 허가-----

-----.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
----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
----- 하여야 --.

② -----

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5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

---- 반환하여야 -----
----- 통지하여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

----- 별지 제8호서식의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하여야 ---.

제15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 상호 간에 -----
--- 상호 간 또는 -----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면 제외한다)-----

----- 대여 받아서----- .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② -----

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
고해야 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
다.

② (생략)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
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
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 상호 간-----

----- 대여
받으려----- 별지
제9호서식의 금전 거래 신고서
----- 신
고하여야 ----.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 솔선수범하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성희롱 금지) -----
----- 상
호 간 또는 의회사무과 -----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 때
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동강령
에 대한 조례 위반행위 신고서-
-----.

② -----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조례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 제시하
여야 --.

③ ----- 신
고받은 의장은 신고 사항-----

-----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회에 자문하여야 ----.

④ -----
--- 운영 -----

----- 보장하여야 -----

----- 하여야 한다.

⑤ -----

----- 받아 「지방자치법」
에 -----
---- 하여야 --.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한다.

1. · 2. (생략)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략)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

----- 신고하여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하여야 --.

③ -----
----- 별지 제6호 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
-----.

④ -----
----- 하여야 하는 -----

-----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
-- 인도받으면 -----

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생략)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지 제12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

1. 2. (현행과 같음)

3. -----

--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4.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

-- 인도 경위 -----
----- 통
보하여야 --. -----

-----.

제6장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해야 하며, 2회 이상 공개 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제6장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 운영 -----

--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촉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모집

하여야 ----- 공개

모집하였음-----

----- 미달하

면 -----

불구하고 담양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
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
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의장
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
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
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생략)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2. (생략)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
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생략)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

--. -----
----- 하여야 -
--.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 -----
--.

② -----

----- 위촉하여야 --.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법률 자문 -----

--

4. (현행과 같음)

5. ----- 사안 -----

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
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해야 하며, 회의록은 회
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
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
함해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①·② (생략)

② -----

회피하여야 -----
-----.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 자문 요청
-----.

②

통지하여야

요할 때는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작성

• 관리하여야 -----

----- 포

함하여야 --.

제26조(의견 청취) ①·② (현행)

제27조(<u>의결사항의 통지</u>)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u>통보해야</u>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u>아니된다</u>. 제29조(간사) ① <u>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u> ② <u>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u> 제30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u>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에 따라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u>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운영</u>) ① <u>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u> ② <u>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u>	과 같음) 제27조(<u>의결 사항의 통지</u>) ----- ----- ----- --- <u>통보하여야</u> --. 제28조(위원의 비밀 유지) ----- ----- ----- <u>아니 된다</u>. 제29조(간사) <u>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u> 제30조(자문료의 지급) ----- --- <u>범위에서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u> ----- -----. 제32조(<u>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운영</u>)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	--

<u>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u>	
----------------------	--

제3조(「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u>의회의</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u>의회의운영등 입법활동</u> 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u>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u> -----. ② ----- ----- <u>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u> -----.
제3조(사무과장) ① (생략) ② 사무과장은 <u>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3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u>총괄하고 소속 직원</u> -----.
제4조(전문위원) ① <u>의장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u>	제4조(전문위원) ① <u>소속 위원회</u> -----

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담양군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

② ----- 소속 위원회의 -----.

③ ----- 제2항
에 따른 사무 이외-----
----- 대해서-----
-----.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

-----.

② -----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

③ -----

대해서-----
-----.

④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

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에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사무 수행이 제한된
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
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
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
활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
된 사항

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
선거에 관한 사항

5. 제2항의 직무 범위 이외에 의
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
함된 사항

6.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

<삭 제>

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
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
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
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u>제5항에 따른다.</u> <u>제5조 (생 략)</u> <u>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u> <u>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u> <u><삭 제></u>
--	--

제4조(「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 ----- ----- ---
제2조(복무 선서) ①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u>선서</u> 해야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 ----- ----- ----- ----- ----- 선 <u>서하여야</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제3조(책임 완수) ----- ----- ----- -----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근무 기강 확립) ① 공무원
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
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
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 4. (생략)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
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

----- 완수하여야 --.

제4조(근무 기강 확립) ① -----

----- 존중하여야 --.

② -----
----- 준수하여야 --.

제5조(비밀 엄수) -----

----- 아니 --. -----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친절·공정) ① -----

----- 처리
하여야 -----
-----.

② -----

----- 처리하여야 --.

제7조(비상근무) ① -----

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
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
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
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
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
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
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
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
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취하여야
-----.

② -----

----- 취
하여야 -----
-----.

<삭 제>

제8조(겸임 근무) ① -----

-----.
----- 겸
임 업무----- 관해서-----

-----.

② ----- 겸임
업무-----

----- 통보

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
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
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
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
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
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
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
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
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
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
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
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생 략)

하여야 -----
-----.

제9조(파견근무) ① -----

----- 기관장-----
-----.

② -----

----- 통보하여야 --.

<삭 제>

제11조(복장 등) ① -----

----- 착용하여야 --.

② -----
---- 관해서-----
-----.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본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연가일수 및 경력직·특수경력직의 연가가산) ① (생략)

②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② -----

----- 한다) 또는 -----
----- 초과하면 -----

-----.

제13조(연가일수 및 경력직·특수경력직의 연가가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4와 -----.

제14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

----- 실시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

----- 허가하여야 -----

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2. (생략)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

--.

④ -----

----- 때는 -----

-----.
-----.

제15조(병가) ① -----
----- 각 호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요할
때는 -----
-----.

③ -----

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종전의
제2항은 삭제,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③ ~ ⑤ (생략)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 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1. · 2. (생략)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 분할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6회 분할 가능))

⑦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 첨부하여야
 ---.

제16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때는 _____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능)

4. -----
----- 가능)

⑦ _____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6항을 따른다.

⑧ (생략)

⑨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⑩ (생략)

----- 관해서-----
-----.

⑧ (현행과 같음)

⑨ -----
----- 모성보호시간과 -----

--.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현행과 같음)